

예 산 총 칙

2011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59,857,457	10,795,724
일반회계	356,047,647	10,681,429
특별회계	3,809,810	114,294
기타특별회계	3,809,810	114,294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1,867,343	56,020
주택사업특별회계	140,923	4,228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985,403	29,562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235,000	7,050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581,141	17,434

제 2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

제 3 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561,843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